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50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2. 제안사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개정(안 제4조)
- 나.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내용 세분화(안 제6조~제11조)
- 다.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삭제(안 제7조)
- 라.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법 삭제(안 제9조)

4.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사항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007년부터 마포구는 관내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20개의 호실을 관리하며, 창업 초기기업의 R&D(연구개발)중심의 연구개발기업과 제품 사업화를 통해 생산형 기업(사업화)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음.

[표 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 현황

- 예비 및 신규창업자 대상 경영, 마케팅, 재무 등 보육서비스 지원
- 사무실 공간 및 시설 지원

구분	내 용	비고
개 관 일	2007. 7.	중소벤처기업부 지정BI ¹⁾
규 모	마포구 매봉산로 18 4~6층	
위탁기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홍철기)	
위탁기간	2022.1.1.~2023.12.31.	
운영인원	3명(센터장1, 매니저2)	
23년 예산	154,395천원 (국비22,180천원, 구비132,215천원)	

※출처: 2023년마포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Business Incubator)는 독창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해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내용²⁾을 반영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수정하였음.
- 지난 2019년 마포구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³⁾(이하 “각종위원회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2019.3.21.시행)
-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의 임기(제8조), 회의(제9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등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운영의 위탁(제13조)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임.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각종위원회조례를 참고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1-90호](2021.12.16. 개정·시행)

제26조(입주대상자)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삭제
- ④ 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TIPS)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시행 2021. 12. 1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26조(입주대상자)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TIPS)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